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해양수산부 (해양레저관광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(안 제9조제3호)

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

나. 서식 개정 (안 별지 제1호 서식)

정부조직법 개정(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 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 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28. ~ 3. 10.)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착용”을 “착용하거나,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해양경비안전관서”를 “해양경찰관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야간 안전관리)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	제9조(야간 안전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 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 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<u>착용</u> 할 것	3. ----- ----- ----- <u>착용하거나,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--</u>

개정 서식

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연락처

신고사항		
활동일시		
이용 수중레저기구	종류	
	선명 (해당 시)	
	정원	
활동구역 및 이동거리		
예정 귀환시간		

동 승 자	성명	생년월일	주소	전화번호

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의 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-5275